

광주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768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76838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3. 30 선고 2022가단661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항소인 B영농조합피해대책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애프터너스

담당변호사 김지훈, 이병주

변론종결 2024. 3. 28.

판결선고 2024. 4. 18.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3. 30. 선고 2022가단6613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1. 5.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21. 5. 18. 접수 제51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관련하여 해당금융기관 및 그 청산 또는 파산법인, 정리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의 매입, 인수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C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등

1) 주식회사 E은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2014. 12. 4. C에게 F과 연대하여

29억 5,080만 원 및 그 중 52,998,181원에 대하여는 2014. 9. 31., 1,945,420,149원에 대하여는 2014. 11. 19., 6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9.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1. 7.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5. 1. 16.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하고, 그에 대응하는 채무를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양수금채무'라고 한다),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C과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체결

1) C은 2018.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G 등과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마트 물건 판매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 사업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2014. 7. 28.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합계 897,709,45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431 사기 등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2) C은 2021. 5. 26.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2021노1609) 2023. 12. 6. 그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3. 12. 14. 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C은 2021. 5.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의 1225/6930지분 중 4625/69300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이전받은 지분에 관하여 2021. 5.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2021. 5. 17.자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등기부상 원인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직무상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인 2021. 5. 17.경 C에 대하여 29억 5,08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피고는 C이 2017년경 원금 20억 원 및 경매비용 1억 원의 합계 2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계약 당시 C의 재산상태

갑 제1호증, 1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5. 17.경 기준 C의 적극재산으로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76,694,974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수금채무, 체납세액 5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C은 2021. 5. 17.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등).

나) 구체적인 판단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 내지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특정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인 만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이렇듯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자인 피고도 악의로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C이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위 외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피고에게 피해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H이 2021. 5. 18. C에게, C이 같은 날 피고에게 이전한 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625/69300인데,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지분의 가액은 약 7,600만 원 상당인 점, ② C은 2021. 5.경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었으므로 신용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황인데도 H이 C으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지 않은 채로 외상으로 C에게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C이 H의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하여 두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C은 2011. 7. 18. J의 지분(245/6930)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나, K가 2011. 12.경, L이 2016. 10.경 C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갑 제2호증의 1 순위번호 3, 3-1, 3-2 참조).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한 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 주장과 같이 타인 명의로 그 등기를 경로해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③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C이 H으로부터 1,500만 원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1,500만 원은 개별공시지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계약 당시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C이 그 책임재산을 증여 내지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C은 관련 형사사건 절차에서 피해회복 차원에서 피해자들로 구성된 피고에게 피해금을 반환할 의무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만큼, 피고는 선의의 취득자라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제1항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C과 피고는 '특정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수행 과정상 관여된 자들이자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특별한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합계 897,709,45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의 대표자 및 그 구성원인 피해자로서는 C이 위 8억 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C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21. 5. 18. 접수 제51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섭, 판사 박은주, 판사 변종두

별지